

학생생활인권 규정

제 정 : 2010. 10. 5
개 정 : 2021. 3. 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서해중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민주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호)에 의거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총 칙

제4조 【학생생활교육 원칙】

-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생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학생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⑦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 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장 소속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제6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 조언
- ④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시지도
- ⑤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한다.
 4. 비상임위원 : 담임교사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5. 간사 : 각 학년 생활지도담당교사는 간사를 겸임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하고 업무를 담당한다.
 6. 기타위원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교육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기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회의소집】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담당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학년별로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각 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14조 【학생생활교육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회복적 생활교육(징계 외 생활교육)
 - 2. 학교 내의 봉사
 - 3. 사회봉사
 - 4. 특별교육 이수
 - 5.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 【학생생활교육 방법】 학생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회복적 생활교육(징계 외 생활교육)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일~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학교 내의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 1일~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3. 상담·회복적 생활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1일~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교육 이수

-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1일~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
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
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
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5. 특별교육기관에서 이수를 받았을 경우,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16조 【학생생활지도 기준】 학생생활지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2021 적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4	무단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미인정지각(10회이상), 미인정조퇴(5회이상), 미인정결과(5회이상), 미인정 결석(5회이상)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통신기기)	○	○	○	○
8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9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10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2	담배와 화기류 소지 및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13	흥기를 휴대한 학생	○	○	○	○
14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8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19	청소년 유해약물을 복용, 흡입한 학생	○	○	○	○
20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
21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3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5	수업 중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조작하는 학생	○	○		
26	기타 학생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학생	○	○	○	○
27	학생생활인권규정(용의복장규정)을 20회 이상 위반한 학생	○	○	○	
2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29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30	학생신분이 아닌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31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의결 재적위원 2/3 참석 2/3이상 찬성 채택)	○	○	○	○

제17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의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8조 【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이의제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9조 【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18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 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재심 청구】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21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 【심의절차】 학생생활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개회
- ② 심의과정 설명
- ③ 사안설명 및 질의, 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④ 의견청취 및 질의, 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⑤ 의견진술 및 질의, 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

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⑧ 학생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3조 【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학생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학생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학생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대상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대상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절 규정의 개정

제26조 【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학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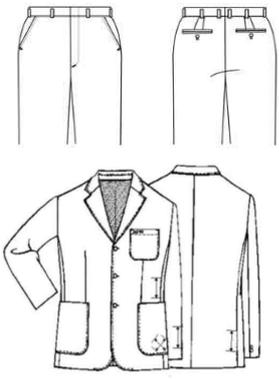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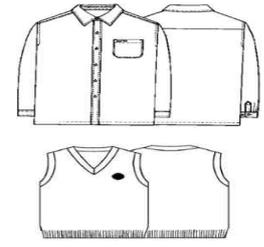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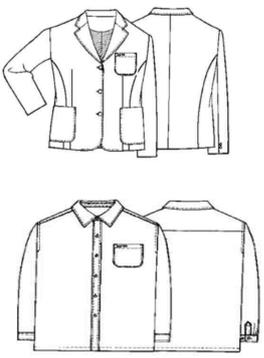
제1절 교내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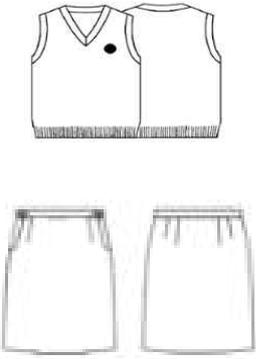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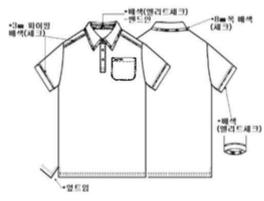
제27조 【복장】

- ①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한다.
- ② 교복의 종류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등교 시 교복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규정된 생활복도 허용한다.
- ④ 교복(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동절기에 동복 자켓 없이 외투 형태의 겹옷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외투 안에 조끼를 포함한 모든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후드티 등과 같이 앞이 열리지 않는 외투는 불허한다.

구분		종류	비고
동복	상의	자켓, 조끼, 와이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 교복은 변형하지 않는다.
	하의	동복 바지(남,여) 스커트(여)	
춘추복	상의	조끼, 와이셔츠(블라우스), 넥타이(리본)	※여학생은 리본 및 넥타이 착용 허용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의	동복 바지(남,여), 스커트(여)	
하복	상의	와이셔츠(블라우스)	
	하의	하복 바지(남,여) 및 생활복 반바지(남,여), 스커트(여)	

<2021학년도 교복 사양서>

동복 및 춘추복	남학생 (4pc)		<p>○ 자켓</p> <p>1. 원단 : 모 50%+폴리에스테르 47%+우레탄3% (회색체크개버딘)</p> <p>2. 디자인 : 주머니 중앙 학교 마크 부착 자켓 속주머니 명찰 부착 학교고유단추 21mm/15mm</p> <p>*안감 : 회색(단색)- 폴리에스테르 100%</p>
			<p>○ 바지</p> <p>1. 원단 : 모 50%+폴리에스테르 47%+스판3% (회색스판개버딘)</p> <p>2.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p> <p>○ 와이셔츠</p> <p>1. 원단: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p> <p>2. 디자인: 각카라, 흰색 단추, 회색</p> <p>○조끼3</p> <p>1. 원단: 모 50%+폴리에스테르 50%</p> <p>2. 디자인: 브이넥, 마크부착, 곤색</p>
	여학생 (4pc)		<p>○ 자켓</p> <p>1. 원단 : 모 50%+폴리에스테르 47%+우레탄3% (회색개버딘)</p> <p>2. 디자인 : 주머니 중앙 학교 마크 부착 자켓 속주머니 명찰부착 학교고유단추 18mm/15mm</p> <p>*안감 : 회색(단색)- 폴리에스테르 100%</p> <p>○ 스커트</p> <p>1. 원단 : 모 50%+폴리에스테르 47%+스판3% (회색체크개버딘)</p> <p>2. 디자인 : 앞판-주름 없음(H라인)</p>

			<p>뒷판-통자</p> <p>*안감 : 회색(단색)- 폴리에스테르 100%</p> <p>○ 바지</p> <p>1. 원단 : 모 50%+폴리에스테르 47%+스판3% (회색스판개버딘)</p> <p>2. 디자인 : 신사바지 노턱 스타일</p> <p>●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와 바지에서 선택 가능함</p> <p>○ 와이셔츠</p> <p>1. 원단: 폴리에스테르 75%+레이온 25%</p> <p>2. 디자인: 각카라, 흰색 단추, 회색</p> <p>○조끼</p> <p>1. 원단: 모 50%+폴리에스테르 50%</p> <p>2. 디자인: 브이넥, 마크부착, 곤색</p>
<p>하복/남녀공용</p>		<p>1. 원단 : 겉감-폴리에스테르 100% (네이비색 기능성) 배색-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네이비색 체크)</p> <p>2. 디자인 : Y카라 주머니 중앙 학교 마크 부착 주머니 명찰부착</p>	
	<p>※ 로고크기</p> 	<p>1. 원단: 겉감-폴리에스테르 100% (네이비 기능성) 배색-폴리에스테르 65%+레이온 35% (하복 상의에 있는 체크무늬)</p> <p>2. 디자인</p> <p>① 허리 단-안쪽으로 끈을 묶을 수 있도록 제작</p> <p>② 옆 솔기-양쪽에 하복 상의 배색과 같은 체크무늬천 바이어스 0.2cm 넓이로 처리함</p> <p>③ 옆트임-옆트임 없음.</p> <p>④ 로고-왼쪽 아래 영문 대문자 흰색으로 SEOHAE 라고 표기</p> <p>⑤ 호주머니-앞 양쪽에 지퍼(숨은 지퍼) 달린 호주머니</p>	
<p>춘추복 넥타이 (남,여 공통)</p>	<p>울 50%+폴리에스테르 50%</p>		

제28조 【두발】 두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되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모습을 갖추도록 한다.
- ② 파마와 염색은 하지 않는다.
- ③ 머리에 모양을 연출하기 위한 상처내기(스크래치)를 하지 않는다.
- ④ 헤어제품은 머리에 변형을 주지 않는 학생다운 두발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되, 색깔 있는

헤어제품은 사용을 금한다.

- ⑤ 교내에서의 모자 착용은 금지한다. 단 두상에 흉터, 수술자국 등 개인사정이 있을 시 사전 생활인권안전부의 허가를 득한 후 착용할 수 있다.

제29조 【액세서리】

- ① 귀걸이, 고리(피어싱) 등의 착용을 일체 금지한다.
- ② 화장은 틴트, 눈썹, 피부를 허용한다. 단, 색조화장, 속눈썹 마스크라, 아이라인은 금하며, 수업시간에 미용과 관련한 물품(거울, 화장품 등)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③ 매니큐어는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안경의 경우 색깔이 짙게 들어간 렌즈나 서클렌즈 착용은 규제한다.

제30조 【명찰】 명찰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상의 좌측 주머니 위에 호주머니형(또는 탈부착형)으로 부착한다.

제31조 【신발】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제32조 【가방】 등학교 시 반드시 가방을 휴대하여야 하며 상식에서 어긋난 사치성 가방, 여행용 가방, 숙녀용 핸드백 등은 금한다.

제33조 【소지품 검사】

- ①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 ② 소지품 검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 ③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 보호하거나 보호자, 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추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인권안전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34조 【학습권 침해】 학교폭력 등 사안 발생 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

위 안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급한 상황의 경우 학교장의 재가(유선 보고)를 얻어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공개된 장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 조례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되돌려 받는다. 단,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및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요청 시에는 교과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② 일과 시간 내 휴대폰을 소지하였을 경우 교육목적 상 강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5일 이내의 최소 기간으로 설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관리하거나 동의를 없는 경우 학부모에게 전자기기를 인계하도록 한다.
- ③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④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⑤ 고가의 정보통신 기기(MP3, PDP)등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지 및 사용을 자제한다.

제36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낙서를 해서는 안 되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38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39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⑤ 교내에서는 어떠한 애정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40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1조 【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2조 【기타 교내생활】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의견 게시판을 설치, 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 ⑥ 다음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 담당부장은 지도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방과 후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제43조 【출결사항】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포상】 포상종류, 시기, 대상자 추천, 대상 선정은 본교 '포상규정'을 따른다.

제45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6조 【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학생마당, 학생생활인권규정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 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일주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예, 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47조 【교외 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준수한다.
-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⑤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⑥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48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4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49조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0조 【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1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

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제53조 【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54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6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0월 5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8월 16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05월 13일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4월 04일 3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0월 19일 4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2일 5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